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636호
----------	--------

제출년월일 2025. 7.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시설(안 제3조)
- 다. 화재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안 제4조)
- 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예산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붙임
- 나. 예산 조치 : 2026년 본예산 편성 예정(비용추계서 별첨)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2025. 5. 21. ~ 6. 10. (20일)
 - 2) 부서협의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경기도 : 안전기획과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김포시의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를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안내 표지

를 부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소방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안전기획관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안전기획관 류 규 형
	담 당 성 명	중대재해팀장 최 종 호
	담 당 자 전 화	지방시설서기보 원 단 희(☎54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도 청사(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경기도의회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안전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기관 및 단체의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도지사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시설 중 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시·군,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김포시 청사 및 김포시 의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 부착
- 제3조2항에 따라 시에서 관리·위탁하는 시설(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2. 비용추계 : 해당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안전기획관 류규형 팀장 최종호